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물출자 허위 신고 - 사기죄 성

립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216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생략한 부분)와 같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6. 8.경부터 2017. 4.경 사이에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현물인력 자체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현물인력 자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계좌 이체하여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물인력인 H이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의 급여가 월 166만 원인 것처럼 근로계약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월 연구비를 180만 원으로 산정하여 참여율 80%를 적용, 월 144만 원씩 5개월간 총 72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 (<http://cleco-cms.keiti.re.kr>)을 통해 제출한 다음, 마치 연구기간 중인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매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이체처리결과별 상세조회서 5매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담금에서 720만 원을 공제받았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80,900,000원에 관한 재물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연구원들에게 신고한 대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로부터 80,900,000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80,900,000원 상당의 현물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재물편취에 의한 사기죄와 재산상 이득 취득에 의한 사기죄 상호간),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106 판결(축소사실인 사기 미수죄의 경우) 참조).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단순한 채무변제 유예의 정도를 넘어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에 있어 피고인이 부담하는 부분 중 90% 상당이 현물부담이므로 이 사건 협약상 중요한 의무를 구성하고 있으며 현금부담금과 본질상 성격이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민간부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이 사건 협약상 피해자가 부담한 정부출연금의 제대로 쓰여지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고 피해자는 공공기관으로서 피고인의 의무이행을 적정하게 감시할 책임이 있는 점, 이에 운영규정과 이에 따른 지침은 이를 협약상대방의 자율에 맡기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도 하에 연구개발비에 관한 정산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정산절차를 거쳐 정산금의 확정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정산절차를 완료하고 정산금을 확정하는 조치는 피고인의 현물출자 채무 이행 완료에 따른 재산상 이익에 관한 처분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이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한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이 문제되면서 피고

인의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기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 내지 위조된 서류를 갖춰 피해자에게 신고한 시점에 이르러(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해연도가 끝난 뒤에 정산하려는 의도였다고 변소한 바 있으나, 오히려 이 사건이 문제되자 앞서 본바와 같이 돈을 이체하였다 돌려받아 허위의 인건비 지급내역을 만들고 이체증을 변조하였고,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당시의 피고인의 범의 또한 추인된다)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사기미수죄로 처단할 수 있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216 판결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